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정 2004. 7. 1. 규정 제 3호	개정 2009.12. 4. 규정 제128호
개정 2004. 8.12. 규정 제30호	개정 2011. 6.14. 규정 제164호
개정 2005. 1.25. 규정 제35호	개정 2011. 9. 6. 규정 제168호
개정 2005. 6.24. 규정 제38호	개정 2012. 1.31. 규정 제172호
개정 2006. 3.13. 규정 제47호	개정 2012. 6. 4. 규정 제180호
개정 2008. 3.10. 규정 제66호	개정 2012.11.20. 규정 제184호
개정 2008. 9. 4. 규정 제77호	개정 2014. 4.18. 규정 제201호
개정 2009. 1.29. 규정 제83호	개정 2016. 3.23. 규정 제231호
개정 2009. 2.20. 규정 제89호	개정 2016. 9.23. 규정 제242호
개정 2014. 4. 7. 규정 제199호	개정 2017. 4.25. 규정 제256호
(일부개정) 2014.11.13. 규정 제21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개정 2009. 4.24. 규정 제98호	개정 2017.12.15. 규정 제273호
개정 2009. 9. 1. 규정 제123호	개정 2018. 4.18. 규정 제284호
개정 2009. 9.29. 규정 제124호	개정 2018.12.11. 규정 제299호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09.4.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4.1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4.18>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4.24>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4.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09.4.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8.4.18>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개정 2018.4.18>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11>